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2 선고 2021가단31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2,750,050원 및 그 중 31,413,698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백규

별지